

# 서울특별시마포구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2013. 2. 27  
복지도시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13. 2. 13. 마포구청장
- 나. 회부일자 : 2013. 2. 18.
- 다. 상정일자 : 제175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(2013. 2. 26)  
상정, 심사, 보류  
제175회 임시회 제2차 위원회(2013. 2. 27)  
상정, 심사, 의결

## 2. 제안설명요지 ( 제안설명자 : 한정무 도시계획과장 )

### 가. 제안이유

- 국민의 권리·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마포구 도시계획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.

### 나. 주요내용

- 1) 위원회 기능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용어로 정비(안 제3조)
- 2) 위원회 구성 조정(안 제4조)
  - 가) 위원장 :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
  - 나) 위촉 위원의 수 : 전체위원의 3분의 2 이상으로 구성

- 다) 당연직 위원 : 부구청장, 도시환경국장, 건설교통국장
- 라) 위촉 위원의 임기 및 연임 제한 : 연임 1회로 제한
- 마) 위원 위촉 시 승낙서 및 서약서 징구 및 위촉장 서식 규정
- 3) 위원의 제척·회피·기피 규정(안 제8조)
- 4) 위원의 해촉 규정(안 제9조)
- 5) 회의 자료의 요구 및 설명 등 규정(안 제12조)
  - 이해관계인의 설명 및 의견청취 할 수 있는 규정 마련
- 6) 회의록 공개 시점을 심의 종결 후 30일(심사 보류된 안건의 경우 6개월) 경과한 날부터 공개 규정(안 제14조제2항)
- 7) 운영세칙(안 제15조)
  -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준용
- 8) 그 밖에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맞게 조문을 정비 (안 전반)

### 3. 검토보고 (김은모 전문위원)

- 본 조례안은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및 같은 법 시행령과 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」의 상위법령 개정에 따르고, 최근 각종 도시개발사업 추진 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의 장기간 연임으로 인한 이권 개입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어, 이러한 부패를 차단하고자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우리 구 도시계획위원회 조례의 미비한 위원회 심의 기준 및 절차 등 관련규정을 현행 법조문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.
- 개정조례안의 요지
  - 1)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

- 15인 이상 20인 이내 => 20명 이상 25명 이하(안 제4조 제1항)
- 2)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=> 구청장이 위원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하며(안 제4조 제2항)
  - 3) 도시계획 관련분야 전문 위원은 구청장이 50% 이상 임명 또는 위촉한다. =>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위원은 전체위원의 2/3이상 이어야 한다. 다만, 부구청장, 도시환경국장, 건설교통국장 당연직으로 한다.(안제4조 제3항)
  - 4)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 =>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(안 제4조 제4항)
  - 5) 3개 분과위원회(제1~제3분과 위원회) => 하나 이상의 분과위원회를 두되, 이 경우 심의 또는 자문할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.(안 제7조)
  - 6) 위원의 제척 · 회피 · 기피 규정(안 제8조)
  - 7) 위원의 해촉 규정(안 제9조)
  - 8) 회의 자료의 요구 및 설명 등 규정(안 제12조)  
- 이해관계인의 설명 및 의견청취 할 수 있는 규정 마련
  - 9) 회의록 공개 시점을 심의 종결 후 30일(심사 보류된 안건의 경우 6개월) 경과한 날부터 공개 규정(안 제14조제2항)
  - 10) 제3장 과태료의 부과징수 규정 : 삭제
  - 11) 운영세칙 규정(안 제15조)을 신설함.

#### ○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

- 1) 본 개정 조례안 제3조는 도시계획위원회 기능에 대한 용어 정의가 명확하게 안 되어 있어, 이를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용어로 정비하였고
- 2) 안 제4조(위원회 구성) 제1항은 위원수를 종전 15명 이상 20명 이하를 20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확대하여 보다 많은 도시계획 분야 전문 위원들이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여러 분야의 전문

- 위원들이 공정하고 투명한 도시계획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
- 3)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종전 위원장을 부구청장이 맡도록 되어 있어 위원회 심의 시 집행부의 추진계획이나 의지가 반영될 여지가 있었으나, 개정 조례안 제4조 제2항에서는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위원장을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하여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였고
  - 4) 같은 조 제3항에서는 도시계획관련 분야 외부 전문가 위원회 위원을 종전 구청장이 50% 이상 임명 또는 위촉한다고 하였으나 개정안에서는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위원은 전체 위원의 2/3이상으로 하되, 다만, 부구청장, 도시환경국장, 건설교통국장은 당연직으로 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심사 관련 분야 해당부서 국장이 도시계획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함은 물론 타 위원들의 질문에 현장에서 직접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향후 집행부의 도시계획 추진계획 방향 등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심도 깊은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하였고,
  - 5) 같은 조 제4항에서는 도시계획관련 분야 전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었는데, 도시계획 심사시 위원의 장기간 연임으로 인한 우호적인 위원들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이권개입 등 여지가 있어, 이러한 부패차단을 위한 제도 개선으로 개정안에서는 1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도록 연임횟수를 제한하였음.
  - 6) 같은 조 제5항에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승낙서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서약서를 받아야 하며, 위촉장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다고 하여 위원에 대한 명확한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관련 서식을 징구하도록 하였으며,
  - 7) 안 제7조(분과위원회)는 3개 분과위원회(제1~제3분과 위원회)로 세분화하던 것을 위원회에서 심의 및 자문할 사항에 따라서 하나

이상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여, 탄력성 있는 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,

- 8) 또한 종전 조례에서 도시계획 위원회 심의 기준 및 절차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
- ▶ 안 제8조 : 위원의 제척·회피·기피
  - ▶ 안 제9조 : 위원의 해촉
  - ▶ 안 제12조 : 회의자료의 요구 및 설명 등 규정을 새로 신설하여 미비했던 위원의 제척·회피·기피 및 해촉규정을 보완하였고
  - ▶ 안 제14조 제2항 : 회의록 공개 시점을 심의 종결 후 30일 경과한 날(심사 보류된 안건의 경우 6개월)로부터 공개하도록 하여 도시계획 심의결과를 투명하고 명확하게 하도록 규정을 두었으며
- 9)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제5조(다른 법률과의 관계) : 과태료의 부과·징수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중 이 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되어 있어 상위법인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134조(과태료의 부과)규정이 삭제되어 종전 마포구도시계획위원회 조례 제14조~제19조(과태료의 부과·징수)규정을 삭제하였고
- 10) 안 제15조에서는 이 조례에서 규정한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」 및 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」에서 정한 사항을 준용하도록 운영세칙을 마련하여 위원회 운영 시 심의기준 및 절차 미비로 인한 위원회의 자의적 운영을 방지하도록 하였음.

○ 검토의견으로는

- 1) 본 조례안은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선임 시 승낙서 및 서약서를 징구하고 위촉장을 주어 구성 초기부터 위원에 대한 책임과 의무감을 명확히 하고, 위원의 중립성을 강조하여 도시계획 심사 시 이권개입에

대한 방지대책을 마련함은 물론 도시계획 심의 및 자문사항에 따라 3개의 분과위원회에서 하나 이상의 분과위원회로 축소·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탄력성 있는 분과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였으나, 특히 외부 전문가 위원 선정 시 같은 분야의 위원을 어느 한 분야에 집중하여 선정하지 말고 여러분야의 위원을 고루 선정할 수 있도록 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도시계획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, 도시계획 분야와 관련이 없는 위원이 선임되지 않도록 관계 규정에 맞게 위원 선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임.

2) 또한 본 조례안에 있어서 상위법 규정에 따르도록 한 과태료 규정은 삭제하여 간결한 조례로 정비하였고, 위원회 회의자료 및 회의록 등을 공개하는 규정을 새로 신설하여 도시계획위원회가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심의 과정이 될 수 있도록 개정함으로써 국민의 권익 및 재산권 보호에도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사료되며, 또한 본 조례안은 입법 예고 절차를 거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고, 그 밖에 「알기쉬운 법령기준」 및 한글 맞춤법에 따라 조문과 용어를 알기 쉽고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한 것으로 본 조례안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5. 토론요지 : 없음
6. 심사결과 : 수정가결
7.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8. 기 타 : 없음

# 서울특별시마포구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	
번호	

제안년월일 : 2013. 2. 27.

제안자 : 복지도시위원장

## 1. 수정이유

외부 민간위원의 공개모집을 공모방식과 외부 추천방식으로 병행하여 여러 분야의 우수인력이 참여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, 이름, 소속, 직업 등을 명기한 위원회 위원 명단을 구 홈페이지에 공개함은 물론, 회의 때마다 녹취를 의무화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수정하고자 함.

## 2. 수정 주요내용

- 가. “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공개모집은 공모방식과 외부 추천방식을 병행하도록 한다.” 를 신설함.(안 제4조제6항)
- 나. “구청장은 위원회 위원의 명단을 공개하되, 이름, 소속, 직업 등을 명기하여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.” 를 신설함.  
(안 제4조제7항)
- 다. “회의 시” 를 “회의 때” 로, “이름” 을 “이름 일정기간 이상” 으로 하고,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, “회의록은 매회 녹취를 의무화하고, 속기사에게 작성하게 할 수 있다.” 를 신설함.(안 제14조)

## 서울특별시마포구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마포구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4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⑥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회 공개모집은 공모방식과 외부 추천방식을 병행하도록 한다.
- ⑦ 구청장은 위원회 위원의 명단을 공개하되, 이름, 소속, 직업 등을 명기하여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.

안 제14조제1항 중 “회의 시” 를 “회의 때” 로, “이를” 을 “이를 일정기간 이상” 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 회의록은 매회 녹취를 의무화하고, 속기사에게 작성하게 할 수 있다.



## 수정안 조문 대비표

원 안	수 정 안
<p>제4조(구성) ① ~ ⑤ (생략)</p> <p><u>&lt;신설&gt;</u></p> <p><u>&lt;신설&gt;</u></p> <p>제14조(회의록) ① 간사는 <u>회의</u> 시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다음 회의에 <u>이를</u> 보관하여야 한다.</p> <p><u>&lt;신설&gt;</u></p> <p>② (생략)</p>	<p>제4조(구성) ① ~ ⑤ (원안과 같음)</p> <p><u>⑥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공개 모집은 공모방식과 외부 추천방식을 병행하도록 한다.</u></p> <p><u>⑦ 구청장은 위원회 위원의 명단을 공개하되, 이름, 소속, 직업 등을 명기하여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.</u></p> <p>제14조(회의록) ① ----- <u>회의</u> 때----- ----- <u>이를 일정기간 이상</u> ----- -.</p> <p><u>② 회의록은 매회 녹취를 의무화하고, 속기사에게 작성하게 할 수 있다.</u></p> <p>③ (원안 제2항과 같음)</p>